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7

발의연월일: 2020. 8. 10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승원·홍성국

이상직ㆍ이수진ㆍ서영석

이수진비・윤미향・맹성규

전용기 · 김경만 · 황운하

인재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·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, 보행자의 생명·안전을 위해 필요에따라 임시적·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 시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)
	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
	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
	의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
	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
	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
	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